



제428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어린이놀이시설 편의시설 설치 및 비용 지원 등〉

■ 박정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1089)

2025. 8.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오 세 일

목 차

I . 개요	1
--------------	---

II . 검토의견	2
-----------------	---

I. 개요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박정현의원 등 14인
- (2) 제 안 일 : 2025. 6. 26.
- (3) 회 부 일 : 2025. 6. 27.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가 지난 1991년 비준한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1조에서는 모든 어린이가 적합한 놀이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지난 2009년 비준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7조에서는 장애어린이가 다른 어린이와 마찬가지로 동등하게 모든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어린이놀이시설은 장애아동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보장하고 있지 않아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지적되어 왔음

이에 장애아동이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본 법률에서 정하는 편의시설에 어린이놀이시설을 추가하는 한편, 편의성과 접근성 향상을 위해 정비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용을 일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안 제13조제2항 신설 등).

Ⅱ. 검토의견

1.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어린이놀이기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편의시설 설치 노력 의무를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에 대한 비용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8. (생략) <u><신설></u>	제2조(정의) ----- -----. 1. ~ 8. (현행과 같음) 9. “어린이놀이기구”이란 「 <u>어린이놀이기구 안전관리법</u> 」 제2조 제2호의 어린이놀이기구를 말한다.
제8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u>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는 대상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② (생략) <u><신설></u>	제8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u>대상시설 및 어린이놀이기구에 설치하는-----대상시설 및 어린이놀이기구의-----</u> -----. ② (현행과 같음) <u>제13조의2(어린이놀이기구 설치 지원) ① 어린이놀이기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관리 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장애인 등이 어린이놀이기구를 이용할</u>

	<u>때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어린이 놀이시설에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 <u>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어린이놀이시설에 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정비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u>
--	---

2. 검토의견

- 현재 어린이놀이시설은 대부분 비장애아동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장애아동은 접근성 제약으로 인해 놀이의 주체로 참여하기 어려운 실정임.
- 2025년 6월 기준, 전국에 어린이놀이시설은 84,103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중 무장애 통합놀이시설은 총 8개소로 나타남.¹⁾
 - 참고로, 관련 연구에서는 2021년 기준, 전국에 무장애 통합놀이시설이 23개소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되었으며,²⁾ 최근 개최된 무장애 통합놀이시설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 발표자료에 따르면 2025년 6월 기준, 43개소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음.³⁾⁴⁾

1) 행정안전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시설(놀이시설 통계). <https://www.cpf.go.kr/cpf/ko/nori/0001/index.jsp>, 2025. 6. 28. ‘무장애’ 키워드로 검색)

2) 박현철. (2022). 무장애 통합놀이터의 놀이시설물 디자인 특성에 관한 연구. 상품문화디자인학연구 (KIPAD 논문집), 68, 13-24.

- 이는 국회가 2008년 12월에 비준 동의하고 2009년 1월부터 발효되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7조(장애아동의 동등한 권리 보장) 및 제30조(놀이·여가활동에 대한 동등한 접근권)에서 요구하는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상황임.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관련 조문>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7조 장애아동

1. 당사국은 장애아동이 다른 아동과 동등하게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히 향유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2. 장애아동과 관련된 모든 조치에 있어서는 장애아동의 최대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다.
3. 당사국은 장애아동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다른 아동과 동등하게 자신의 견해(이 견해에 대하여는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정당한 비중이 부여된다)를 자유로이 표현할 권리를 갖고, 이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장애 및 연령에 따라 적절한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보장한다.

제30조 문화생활, 레크리에이션, 여가생활 및 체육활동에 대한 참여

5. 당사국은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레크리에이션, 여가생활 및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의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라. 장애아동이 교내에서의 그러한 활동을 포함하여 놀이, 레크리에이션, 여가활동 및 체육활동의 참여에 대하여 다른 아동과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 개정안은 현행법상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용 대상을 ‘대상시설’ 뿐만 아니라 ‘어린이놀이기구’로 확대하고,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노력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 3) 무장애 통합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2025.6.18./ 주최 : 장애아동 인권네트워크, 국회의원 소병훈·김예지·안태준·서미화) (발제 1) 통합놀이터 조성의 사례와 장애아동 놀이권 보장(조성빈)
- 4) 2025년 기준 무장애 통합놀이기구 8개소는 행정안전부의 「어린이놀이기구 안전관리시스템」에서 ‘무장애’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임. 다만, 관련 연구 및 토론회 등에서 파악하고 있는 무장애 통합놀이기구 개소 수는 각각 현장 실태조사 및 관련 단체의 발표 등에 근거한 수치로, 조사 방식 및 기준의 차이에 따라 다소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보임.

장애아동이 물리적 제약 없이 또래와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놀이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임.

또한, 개정안은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있는 기존 대상시설 체계에 어린이놀이기구를 포함시키지 않고(현행법 제7조)⁵⁾,

편의시설 설치 기준(현행법 제8조)⁶⁾에 대상시설과 어린이놀이기구를 병기하여 적용 대상을 확장하는 동시에, 별도로 제13조의2를 신설하여 편의시설 설치 노력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는데,⁷⁾

이는 어린이놀이기구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를 법적으로 강제하기보다는, 자발적인 설치를 유도하려는 입법적 고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에서는 어린이놀이기구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를 ‘노력 의무’ 수준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비용 지원도 “지원할 수 있다”라는 임의 규정으로 두게 하고 있어, 어린이놀이기구 편의시설의 실질적인 설치 확산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특히, 설치 주체가 민간일 경우 법적 의무가 없는 상황에서 비용 부담과 행정 절차를 감수하면서까지 편의시설 설치를 자발적으로 추진할 유인이 부족할 수 있어, 국고 보조사업 사업 등으로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 않을 경우, 개정안의 취지는 선언적 수준에 그칠 우려가 있음.

5)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대상시설)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원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3. 공동주택
4. 통신시설
5. 그 밖에 장애인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

6)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는 대상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따라서 제8조 본문 중 “설치하여야 하는”을 “설치하는”으로 개정함.

따라서, 시행령 또는 보건복지부 지침을 통해 일정 수준의 인센티브를 포함한 지원 대상, 우선지원 기준, 신청 절차 등 구체적인 집행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이를 위해 개정안 제13조의2에 관련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규정을 명시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임.⁸⁾

3. 관계 부처 및 단체 의견

가. 보건복지부

□ 「장애인등편의법」에서는 「건축법 시행령」상 건축물 용도분류 체계를 기준으로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을 정하고 있는데, 이는 편의시설 설치 기준 적합성 확인 절차가 건축허가와 연계하여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임.

개정안의 ‘어린이놀이기구’는 「건축법 시행령」에서 별도 용도로 분류되어 있지 않아 법령 체계상 편의시설 설치 대상으로 추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장애어린이도 어린이놀이기구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기구 안전관리법」을 보완하는 방식의 검토가 필요해 보임.

8) 개정안 제13조의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놀이기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어린이놀이기구에 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정비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지원 대상, 우선지원 기준, 신청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기획재정부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및 재원확보 노력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도 규정 실익이 적음.

다. 한국장애인개발원

-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및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등 타 법령과 중복되거나 상충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들 법령을 소관하는 부처 간 설치·유지관리 등의 권한과 역할 분담이 불분명한 측면이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문 의 처
02)6788-5502